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808
----------	------

발의연월일 : 2020. 3. 25.

발의의원 : 도일용 의원

1. 제안이유

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새로운 농업의 소득원 창출을 도모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우리군 농촌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각종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0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7조, 제20조, 제23조, 제26조, 제37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따라 달성군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융복합 산업화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개선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지역 사회 공동체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달성군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따른 산업으로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 관내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경영 안정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 농촌자원 현황

2. 군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
3. 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4. 군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5. 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6. 군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농업·농촌발전, 농촌경제활성화 등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계획 또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영 제6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공동사업 지원) 군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군수는 농촌융복합 사업자간 공동 홍보, 마케팅, 품질관리 등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재정과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창업 지원) 군수는 군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을 창업하려는 자에게 관계법령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및 회계 등에 관한 상담
3.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의 사업화에 대한 지원
4. 생산된 제품의 성분 분석·품질 검사 등 지원
5. 신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공간의 임대·제공

제7조(판로지원사업) 군수는 농촌융복합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 제공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융복합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지식·정보의 교류 및 농촌융복합산업 생산제품의 소비촉진 등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대학·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경영 우수자를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9조(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군수는 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참여를 촉진하고 농촌여성의 경제적 권익신장을 위하여 농촌여성에게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금·인력·기술·교육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등의 지원) ① 군수는 군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에 주소나 소재지를 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적용되는 지원 사항 및 특례 사항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이 조례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2.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법인
 -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 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소상공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소상공인
 - 마.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사회적기업
 - 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중소기업
 - 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인 창조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인 창조기업
3.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경영 안정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④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시·도계획에 따라 매년 시·군·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다른 법령에 따라 농업·농촌발전,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계획 또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각각의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을 세울 때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창업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을 하고자 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농촌융복합산업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3.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및 경영·컨설팅 지원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5.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품질검사 및 상용화 지원
6. 시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시설 등 공간의 임대·제공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제23조(판로지원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3.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촌융복합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판매 및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다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지역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홍보 및 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지식·정보 및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대학·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한 홍보 및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경영 우수자를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37조(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참여를 촉진하고 농촌여성의 경제적 권익 신장을 위하여 농촌여성에게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금·인력·기술·교육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농촌융복합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식품 또는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
2.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제1호의 산업에서 생산된 식품 또는 가공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
3.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관광·외식 등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산업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